

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0
----------	-----

2020. 10. 19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10. 5. 강남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10. 19.)  
“ 원안가결 ”

## 2. 제안이유( 제안설명 :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)

-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1년도 인건비,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다. 출연내용 :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

라. 출 연 금 : 856,318천원

- 인 건 비 : 525,139천원
- 운 영 비 : 331,176천원

## 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5. 검토보고 요지( 전문위원 : 이상원 )

- 「지방재정법」 1)에 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21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“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안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,  
출연금 : 856,318천원(인건비 : 525,139천원, 운영비 : 331,176천원)

1)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 요구액	2020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<b>계</b>	<b>856,318</b>	<b>1,035,783</b>	<b>△289,405</b>	<b>△24.0%</b>
<b>인건비</b>	<b>525,139</b>	<b>514,794</b>	<b>10,345</b>	<b>2.0%</b>
기본연봉	405,001	424,592	△19,591	△4.6%
제수당	68,204	54,479	13,725	25.2%
퇴직적립금	51,934	35,723	16,211	45.4%
<b>운영비</b>	<b>331,176</b>	<b>520,989</b>	<b>△189,813</b>	<b>△36.4%</b>
4대보험	22,894	42,077	△19,183	△45.6%
복지포인트	3,000	12,000	△9,000	△75.0%
직원 급량비	9,984	8,448	1,536	18.2%
관내출장여비	6,240	6,600	△360	△5.5%
공공요금 및 제세	21,434	26,337	△4,903	△18.6%
수도전기요금	18,000	10,800	7,200	66.7%
소모품비	44,505	23,907	20,598	86.2%
도서인쇄비	24,160	4,200	19,960	475.2%
지급임차료	18,160	10,640	7,520	70.7%
수선유지비	13,492	11,042	2,450	22.2%
차량유지비	1,950	1,910	40	2.1%
보험료	3,720	2,940	780	26.5%
지급수수료	51,700	14,400	37,300	259.0%
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0	0.0%
관서업무비	4,200	4,880	△680	△13.9%
교육훈련비	6,400	6,000	400	6.7%
회의운영비	21,340	26,380	△5,040	△19.1%
자산취득비	20,000	25,700	△5,700	△22.2%
시설공사비	10,000	252,728	△242,728	△96.0%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2)에 따른 사업

2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(장학사업 포함)
2.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사업<개정 2019.12.20.>
3. 복지시설 간 연계·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
4.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
5.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·보급
6.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
7. 복지관련시설, 자원봉사센터 등 운영<신설 2019.12.20.>

추진에 필요한 사항인지의 설명과 함께, 인건비(재단의 사무국 조직 및 인력 현황 포함 등) 및 운영비의 주요 증감내역 설명이 요구됨

- 아울러, 그간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은 아래 <표1>과 같고, 재단 총예산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<표2>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

**< 표 1 >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현황(기본재산 제외)**

2020.10.12. 현재, 단위 : 천원

		출연금				
연번	년도	잉여금	출연금	집행액	집행잔액	비 고
누계		601,991	2,543,530	1,718,880	360,323	
1	2021(안)	210,000	856,318	-	-	* 잉여금 : 예상액
2	2020	46,789	1,035,783	872,572	210,000	* 집행잔액 : 예상액
3	2019	11,330	413,734	378,275	46,789	
4	2018	92,204	148,000	228,874	11,330	
5	2017	241,668	89,695	239,159	92,204	

**< 표 2 > 복지재단 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(기본재산 제외)**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(안)
총 예산	2,886,338	2,666,133	6,740,566	5,024,491
출 연 금	148,000	413,734	1,035,783	856,318
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	5.1%	15.5%	15.4%	17.0%

**< 표 3 >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현황(기본재산)**

		출연금			
연번	년도	출연금	집행액	집행잔액	비 고
누계		4,000,000	0	4,000,000	
1	2021(안)				
2	2020	2,000,000	0	2,000,000	
3	2019				
4	2018				
5	2016년 이전	2,000,000	0	2,000,000	

※ 집행부 자료 재구성

8.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<신설 2019.12.20.>
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호이동 2019.12.20.>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- 또한, 출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어 보조금과 다르니 그간 출연금 지원액 및 집행내역, 집행잔액 등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.

#### ※ 참고사항

행정자치부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(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-5653 2015.10.19.)”

- 의회에서 출자·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‘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
- 출자·출연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,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금액을 조정 확정할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,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됨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 의 : 출연금 중 운영비에 해당하는 도서인쇄비와 지급수수료가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
- 답 변 :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신설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인쇄비가 증액 편성되었고, 청소용역비, 화분관리 용역비, 방범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발생하여 지급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것임
- 질 의 : 복지재단 설립 당시 운영비나 인건비는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2019년도 후원금의 총 모금액은 어떻게 되는지
- 답 변 : 복지재단에서 순수하게 모금한 금액은 4억 3천만 원정도임

- 질 의 :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금액이 복지재단의 순수 모금액보다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
- 답 변 : 복지재단의 순수 모금 금액은 4억 3천만 원정도이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까지 합치면 약 16억 원 정도인데,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모금활동이 더 저조했음. 현재 10월 3일자로 복지재단 이사장이 퇴임한 상태인데 신인 이사장이 위촉이 되면 관내 기업 및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금액을 늘려 복지재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

#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2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 5.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  
제출부서 : 복지정책과

## 1. 제안이유

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1년도 인건비,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출연개요

가. 출연기관 :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다. 출연내용 :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

라. 출연금 : 856,318천원

- 인건비 : 525,139천원
- 운영비 : 331,176천원

마.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 요구액	2020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<b>계</b>	<b>856,318</b>	<b>1,035,783</b>	<b>△289,405</b>	<b>△24.0%</b>
<b>인건비</b>	<b>525,139</b>	<b>514,794</b>	<b>10,345</b>	<b>2.0%</b>
기본연봉	405,001	424,592	△19,591	△4.6%
제수당	68,204	54,479	13,725	25.2%
퇴직적립금	51,934	35,723	16,211	45.4%
<b>운영비</b>	<b>331,176</b>	<b>520,989</b>	<b>△189,813</b>	<b>△36.4%</b>
4대보험	22,894	42,077	△19,183	△45.6%
복지포인트	3,000	12,000	△9,000	△75.0%
직원 급량비	9,984	8,448	1,536	18.2%
관내출장여비	6,240	6,600	△360	△5.5%
공공요금 및 제세	21,434	26,337	△4,903	△18.6%
수도전기요금	18,000	10,800	7,200	66.7%
소모품비	44,505	23,907	20,598	86.2%
도서인쇄비	24,160	4,200	19,960	475.2%
지급임차료	18,160	10,640	7,520	70.7%
수선유지비	13,492	11,042	2,450	22.2%
차량유지비	1,950	1,910	40	2.1%
보험료	3,720	2,940	780	26.5%
지급수수료	51,700	14,400	37,300	259.0%
업무추진비	30,000	30,000	0	0.0%
관서업무비	4,200	4,880	△680	△13.9%
교육훈련비	6,400	6,000	400	6.7%
회의운영비	21,340	26,380	△5,040	△19.1%
자산취득비	20,000	25,700	△5,700	△22.2%
시설공사비	10,000	252,728	△242,728	△96.0%



### 3. 참고사항

#### 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## 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